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 폐놀[Phenol]

CAS NO	KE NO	UN NO	EC NO
108-95-2	KE-28209	1671	203-632-7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폐놀[Phenol]

동의어 : Hydroxybenzene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용도 : 19.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다. 공급자 정보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주)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53

담당부서 : 관리부

긴급전화번호 : 031 - 495 - 4055 (평일, 08:30~17:30)

2. 유해성 · 위험성

가. 유해성 · 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 물질 경구 구분 3

급성 독성 물질 경피 구분 3

급성 독성 물질 흡입 구분 4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2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만성2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노출) 구분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1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유해 · 위험 문구 :

H301 삼키면 유독함

H311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32 흡입하면 유해함

- H341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11항 참조(MSDS)).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철저히 취급 부위를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화학물질용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P330+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 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응급처치(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를 하시오.
 P330 입을 씻어내시오.
 P361+P364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3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 위험성

- NFPA 보건 : 4. 화재 : 2. 반응성 :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 : Phenol
 관용명 및 이명 : Hydroxybenzene
 CAS NO : 108-95-2
 함유량 : 100 %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
-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 했을 때 :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

-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마.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 분말소화제, 탄산가스, 일반 포말소화제, 분무
-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탄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화재 진압 시 방화복, 소방용 구조헬멧, 소방용 안전화, 소방용 안전장갑,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흘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항 참조)를 착용하여,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접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누출물이 하수시설,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
-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시·도(환경지도과)에 신고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다량누출 :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
-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 의해 처리하시오.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작은 고체상 유출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누출된 물질은 적당한 용기에 쓸어 담고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시오.
- 폐수가 수로, 하수구,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
-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
- 화기엄금
-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
-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
- 취급 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

- 국내규정 : TWA : 5 ppm
- ACGIH 규정 : TWA 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소변 중 Phenol(with hydrolysis) : 250 mg/g 크레아티닌(작업후)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방법 :

-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 분진, 미스트, 흡용 호흡보호구
-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 화합물용)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흡용 여과재)
-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 눈 보호 :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

○ 신체보호 :

-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9. 물리 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 고체

색상 : 자료없음

나. 냄새 : 폐놀 냄새

다. 냄새역치 : 3 ppm

라. pH : 6 (수용액)

마. 녹는점/어는점 : 40.91 °C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81.8 °C

사. 인화점 : 79 °C (c.c.)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8.6 / 1.7 %

카. 증기압 : 0.35 mmHg (25°C)

타. 용해도 : 8.28 g/100mℓ (25°C)

파. 증기밀도 : 3.2

하. 비중 : 1.0576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1.46

너. 자연발화온도 : 715 °C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1.51 cP (80°C)

머. 분자량 : 94.11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

- 탄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호흡기 : 자료없음
- 경구 : 삼키면 유독함
- 눈, 피부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340 mg/kg 실험종 : Rat (OECD TG 401) (ECHA)
 경피 : LD50 660 mg/kg 실험종 : Rabbit (OECD TG 402) (ECHA)
 흡입 : 분진 LC50 1.27 mg/l 4 hr 실험종 : Rat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시험관 내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을 일으킴 OECD TG 431, GLP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을 일으키지 않음 OECD TG 406, GLP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노동부고시 : 해당없음

IARC : Group 3

OSHA : 해당없음

ACGIH : A4

NTP : 해당없음

EU CLP : 해당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있는 경우 양성 OECD Guideline 473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양성 OECD Guideline 474 (ECHA)

생식독성 :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노출) : 시험동물을 이용한 급성 노출 시(호흡, 구강, 피부) 심각한 전신작용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심한 우울증, 중추 신경계 자극, 마비, 기관지 폐렴 등의 2차 장애 유발할 수 있음. 해당 독성의 경우 급성독성에 의한 독성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본 분류에는 적용하지 않음 (HSDB)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반복투여경피독성 시험 결과, 가벼운 떨림, 전신 영향, 피부 각막 비후 증이 관찰됨, 파괴된 피부를 따라 출혈이 관찰됨 또한 높은 농도에 노출된 개체에게 심각한 국소 변화와 종정도에서 심각한 증상전신 내독성이 관찰됨 (NOAELsystemic effects=130mg/kg bw/day) (표적장기 : 중추신경)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 독성 :

- 어류 : 50 8.9 mg/L 96hr Oncorhynchus mykiss (ECHA)
- 갑각류 : EC50 3.1 mg/L 48hr Ceriodaphnia dubia (ECHA)
- 조류 : EC50 61.1 mg/L 96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ECH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 잔류성 : 1.47 log Kow (ECHA)
-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 농축성 : 17.5 ~ 647 (OECD TG 305E, GLP) (ECHA)
- 생분해성 : 62 % 100 hr (OECD TG 301F) (ECHA)

라. 토양 이동성 :

- 14 ~ 73 Koc (ECHA)

마. 오존층 유해성 :

- 해당없음

바. 기타 유해 영향 :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가. 폐기방법 :**

-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
-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 소각 처리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유엔번호 :** 1671**나. 유엔 적정 선적명 :** PHENOL, SOLID**다. 유엔 적정 선적명 :**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6.1
- 용기등급 : II
- 해양오염물질 : 해당됨

라.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안전대책 :

-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 화재시 비상조치 : F-A (General fire schedule)
- 유출시 비상조치 : S-A (Toxic substances)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 하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 특별관리물질 : 해당됨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 해당됨
- 제조등급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해당됨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해당없음
- 생태유해성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됨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 기존화학물질 : 해당됨
- 신규화학물질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 해당없음
- 유해성미확인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본 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한 다음 폐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유독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226.7995/4535.99 kg 500/10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Muta. 2 Acute Tox. 3 * Acute Tox. 3 * STOT RE 2 * Skin Corr. 1B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41 H331 H311 H301 H373 ** H31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한국안전보건공단(KOSHA)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NCIS)
-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본 MSDS는 KOSHA, NCIS, ECHA, NITE, NLM, SIDS, ICSCs, IPCS, ES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나. 최초 작성일자 : 2006-11-15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횟수 : 11
- 최종 개정일자 : 2025-11-07

라. 기타

- 자료없음

변경된 MSDS가 홈페이지에 있으니 www.duksan.kr에서 최신 MSDS를 출력 하세요.

본 MSDS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참고된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사용, 저장, 운송 및 폐기를 위한 안내자료이나, 각각의 사용에 따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